

2025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5년 11월 19일(수) 오후 5시
(회의소집일 : 2025년 11월 10일)
2. 장 소 : 대학본부 2층 회의실
3. 개최기도 : 형희경 의원
4. 참석현황 (정원 12명, 재적 12명, 참석 9명)

구성위원	정원	재적	참 석 자 명 단	불 참 자 명 단
교 원	3명	3명	형희경 김대용 이정미	
직 원	2명	2명	홍성표	김동인
조 교	1명	1명	신다빈	
학 생	3명	3명	양준호	이정민 박정화
등 문	2명	2명	안윤정 이자영	
외부인사	1명	1명	정우식	
합 계	12명	12명	9명	3명

- 배석자 : 김경휘 기획처장, 한송희(간사)

5. 안 건

- 1) 2025학년도 교비 추경예산(안) 자문 건.
- 2)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 건.
- 3)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확인 서명자 선임 건.

6. 성원확인 및 개최선언

- 형희경 의장이 재적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최를 선언하다.

7. 전 회의록 접수

- 전 회의록 확인 후 홍성표 의원의 동의와 김대용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다.

형 희 경	이 정 미	양 준 호
-------	-------	-------

8. 회의내용

1) 제1호 의안 : 2025학년도 교비 추경예산(안) 자문 건.

- 형희경 의장이 김경휘 기획처장에게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김경휘 기획처장이 2025학년도 교비 추경예산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.

- 다 음 -

예산 8,048,695,149원, 추경예산 8,285,930,409원, 증 237,235,260원

- 김경휘 기획처장이 2차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수입 항목으로 수업료 및 국가장학금 증액,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 감액을 보고하고 지출 항목으로는 강의료, 환경개선비 감액 및 장학금 증액 내역을 설명하다.
- 김대용 의원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자 김경휘 기획처장은 대학이 혁신사업에서 B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지급액이 책정되었으나 호남권역 내 S-A등급 대학 증가로 인해 B등급 대학의 배분 예산이 축소되면서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다.
- 형희경 의장이 추경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자문을 요청하니 이정미 의원의 동의와 안윤정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자문하기로 의결하다.

2) 제2호 의안 :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 건.

- 형희경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해 자신이 대학원장을 맡고 있음을 말하며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에 대해 아래의 신·구조문 대비표로 설명하다.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13조(등록)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② 재학생은 매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	제13조(등록) ① <u>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정규등록 : 수업년간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</u> 2. <u>입학등록, 편입학등록, 재입학 등록 : 입학,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</u> 3. <u>연구등록</u> 가. <u>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자격 또는 학위논문대체 인정 심의 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 중 논문 및 연구보고서 지도만 필요한 경우</u> 나. <u>가 목 외 추가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 학점등록을 포함한다.</u>	- 등록의 종류를 명시하고, 연구등록과 학점등록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재학생 및 수료생들의 등록을 명확히 하고자 함

형 희 경	이 준 호	양 준 호
-------	-------	-------

	4. 학점등록 : 수업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(P/F교과 포함)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수료자 중 학위논문대체를 위하여 교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	
<신설>	제13조의2(정규등록)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② 재학생은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, 매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③ 수료자 중 연구등록 또는 학점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	- 수업연한인 4학기 등록을 명시하여 정규등록으로 개정하고자 함
<신설>	제13조의3(연구등록 및 학점등록) ①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학기에 연구등록하여야 하며, 연구등록금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/4로 한다. ②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다음과 같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. 1. 3학점 이하 : 수업료의 1/3 2. 6학점 이하 : 수업료의 2/3 3. 7학점 이상 : 수업료 전액 ③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연구등록금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추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해당 납입금은 수업료 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	- 연구등록금과 학점등록금을 설정함

형희재	이(주)	양준호
-----	------	-----

제19조(교과과정)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2.1.>	제19조(교과과정 및 수업운영) ① <u>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</u> ② <u>대학원의 학년, 학기, 수업일수 등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.</u> ③ <u>교과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원격수업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.</u>	- 대학원은 현재 대면강의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
제20조(수료인정 및 이수학점) ① - ② 생략 ③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<u>대체신청자는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</u>	제20조(수료인정 및 이수학점) ① - ② 현행 ③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<u>대체인정 심의 신청자의 추가 이수학점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다.</u>	- 수료인정 학점 외 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방법을 학칙에서는 삭제하고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
제27조(학위의 수여 및 종별) ① ① 대학원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<u>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</u> 에 학위를 수여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석사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<u>대체심사</u> 를 통과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③ 생략	제27조(학위의 수여 및 종별) ① 대학원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<u>논문심사에 합격한 때</u> 에는 학위를 수여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석사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<u>대체인정 심의</u> 를 통과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③ 현행	- 학위논문 공개발표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- 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대체심사가 아닌 대체인정 심의로 개정하고자 함
제27조의2(학위논문대체)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는 <u>대학원 학칙 제20조 제3항의 학점이수로 인정하고, 연구보고서를 추가로</u>	제27조의2(학위논문대체인정)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는 <u>대학원 학사운영 규정</u> 에 따라 학위논문 <u>대체 인정 심의</u> 를 통과하여야 한	- 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 학

형 회 계	이 3w	양 준 호
-------	------	-------

제출하여야 한다. ② 생략	다. ② 현행	위논문 대체 인정 심의로 개정하고자 함
제28조(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 1 - 2 생략 3. <u>논문세미나Ⅱ 또는 연구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또는 수강한 자</u> 4. 생략	제28조(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 1 - 2 현행 3. <u>학부에서 지정하는 논문작성 관련 교과를 수강한 자</u> 4. 현행	- 논문제출자 및 논문대체인정 신청자 모두 동일한 논문작성 관련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제28조의2(국내외 전문학술지 발표 논문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자격 부여) 입학 후 국내 또는 국제 전문학술지(KCI, SCI(E), SCOPUS 등)에 발표된 논문은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. 단, 학생이 제1저자,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2인 발표 논문에 한한다. 발표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청구 시에는 예수대학교 대학원 논문의 체제와 심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	제28조의2(국내외 전문학술지 발표 논문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자격 부여) <삭제>	-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방법의 하나로 포함하여 개정하고, 해당 규정이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학칙에서는 삭제하고자 함
제30조(<u>논문제출자격 재부여</u>)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,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<u>논문제출자격 재부여</u> 신청을 할 수 있다. 단, 제28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한 후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.	제30조(<u>학위논문·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</u>)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,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<u>학위논문·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</u> 신청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<u>논문제출 자격</u> 을 취득할 수 있다. 단, 제28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한 후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<u>학위논문·대체인정 제출자격</u>	- 학위논문대체인정 제출자격도 재부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해당 조문을 학위논문·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로 개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명시함

정희경

이준우

양준호

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,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연구등록금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/4로 한다. ③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,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재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, 제1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③ 학위논문·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시 신청한 학위청구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.	
제32조(학위청구논문 심사)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은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. ② 현행	제32조(학위청구논문 심사)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. ② 현행	- 학위논문 공개발표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구술시험에 관한 사항 삭제함
제33조의2(학위청구신청 방법) ① 생략 1. ② 학위청구의 신청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<u>1회에 한하여 4학기</u>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방법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4학기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. ③ 학위청구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자는 <u>변경 직후학기를 추가등록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u>	제33조의2(학위청구신청 방법) ① 현행 ② 학위청구의 신청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<u>매학기</u>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방법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학위청구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자 중 <u>연구등록 및 학점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u>	- 학위청구 신청방법을 3학기에 신청하고, 이후 1회에 한하여 4학기만 학위청구 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, 수료생들의 졸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학기 소정기간에 학위청구 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제38조(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)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1. 입학,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- 6 생략	제38조(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)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1. 입학, 수료 및 <u>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심의</u>,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- 6 현행	-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	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, 제27조, 제27조의2는 고등교육법 개정(2017.5)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	
--	--	--

- 김대용 의원이 27조 및 32조의 개정사유("학위논문 공개 발표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")와 구술시험 조항 삭제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하며 공개발표는 논문 심사와 별개의 과정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.
- 이에 형희경 대학원장은 개정의 사유가 공개발표와 상관없이 논문 심사 절차 안에 구술시험이 심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개정(안)을 마련하게 되었으므로 개정 사유를 정정하겠다고 하다.
- 김대용 의원이 학위논문 대체 인정을 9학점으로 하였는데 6학점으로 낮출 수 있는지 질의하자, 형희경 대학원장은 학칙개정을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대학의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24학점 수료 후 9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운영하고 있고, 논문 대체 인정 교과목 이수 시 6학점만으로는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역량을 충분히 키우기 어려울 수 있어 9학점으로 개정(안)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하다.
- 이상 심의 의견에 대해 이정미 의원의 동의와 안윤정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위 <표>와 같이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.

3) 제3호 의안 :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확인 서명자 선임 건.

- 형희경 의장이 본 회의록 간서명자의 지명을 요청하니 형희경 의원, 이정미 의원, 양준호 의원 이상 3명이 추천되니 지명하기로 하고 참석의원 9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지명 의결하다.

9. 폐회선언

- 형희경 의장이 폐회에 대한 성안을 요청하니 김대용 의원이 동의하고 정우식 의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7시 56분이었다.

형 희 경	이 준 호	양 준 호
-------	-------	-------

기록 : 한송희간사

(한송희)

확인 : 형희경의원

(형희경)

김대용의원

(김대용)

이정미의원

(이정미)

홍성표의원

(홍성표)

신다빈의원

(신다빈)

양준호의원

(양준호)

안윤정의원

(안윤정)

이자영의원

(이자영)

정우식의원

(정우식)

형희경

이정미

양준호